

총리령

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
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무총리 (국가보훈처 소관)
연 월 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문화 확산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명패사업을 유족까지 확대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명패를 지급받기 전 사망한 전몰·순직·전상군경, 6·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 사망·부상·공로자,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순직·상이·공로자, 5·18 사망·부상·희생자, 특수임무 사망·부상·공로자의 유족 중 선순위 유족 1명에게도 명패를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명패 부착 대상 확대(안 제2조 1항 개정)
- 나.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유족 중 1명을 명패를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명패를 부착(안 제2조 2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1호 중 “밋”을 “또는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3호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, 제4호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, 제5호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,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공자, 제9호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, 제10호의 국가유공자, 제11호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, 제12호부터 제13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, 제16호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, 제17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(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을 받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을 포함한다)
3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,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5·18민주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
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,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유족 중 1명을 명패를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명패를 부착한다.

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선순위유족의 기준일) 제2조에 따라 명패를 부착할 유족 중 선순위는 매년 1월 1일 기준 선순위인 자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국가유공자 등 명패 수령 유족 지정협의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	처리기간	10일
명패를 받을 유족으로 지정된 사람	대상구분	국가유공자와의 관계	성명	
	보훈번호	생년월일	성별	
	주 소 (전화번호 : , e-mail :)			
협의자	1	국가유공자와의 관계	성명 (인)	생년월일 -
		주 소		
	2	국가유공자와의 관계	성명 (인)	생년월일 -
		주 소		
	3	국가유공자와의 관계	성명 (인)	생년월일 -
		주 소		
	4	국가유공자와의 관계	성명 (인)	생년월일 -
		주 소		
	5	국가유공자와의 관계	성명 (인)	생년월일 -
		주 소		

본인들은 「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의 사람을 국가유공자 등 명패를 받는 유족으로 지정하도록 협의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지방보훈청장 귀하
보훈지청장

신청인 제출서류	해당 없음	수수료 없 음
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

유의사항

- 「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협의에 의한 국가유공자 명패 수령 유족 지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협의에 의하여 명패를 받을 유족 1명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사람이 국가유공자 등 명패 수령 유족 지정 협의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제출한다.

처 리 절 차

이 지정협의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지정협의서 작성



접 수



결 정

신청인

보훈(지)청

보훈(지)청

확 인

담당

주무

과장

(지)청장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부착 대상)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의 집에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(이하 “명패”라 한다) 를 부착한다.	제2조(부착 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독립 유공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	1. ----- ----- ----- 또는 ----- -----
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제4호, 제6호부터 제10호까지, 제12호, 제13호, 제17호 및 제 18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(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전상 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 다)	2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제3호의 유족 중 선순위자 1 명, 제4호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 명, 제5호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,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국가유공자, 제9호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 위자 1명, 제10호의 국가유공 자, 제11호의 유족 중 선순위 자 1명, 제12호부터 제13호까 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 자 1명, 제16호의 유족 중 선

3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5·18민주유공자

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

<신 설>

순위자 1명, 제17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(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고 보상을 받는 사람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을 포함한다)

3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호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,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5·18민주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
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,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가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유족 중 1명을 명패를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명패를 부착한다.

<신 설>

제9조(선순위유족의 기준일) 제2
조에 따라 명패를 부착할 유족
중 선순위자는 매년 1월 1일 기
준 선순위인 자로 한다.